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1 선고 2022가단266052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5524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1 선고 2022가단266052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22. 11. 15.

판결 선고 2023. 2.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0.부터 2022.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사단법인 E(이하 '소외 사단법인')는 2021. 6. 10. 소외 사단법인이 원고로부터 얼굴인식기반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공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영상AI사업 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협력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이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금원의 지급 연대책임에 관하여 약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이행계약 후, 1차년도 연간 매출액 보증금액	1억 원
이 사건 사업이행계약 후, 2차년도 연간 매출액 보증금액	3억 원

다. 이후 이 사건 협력계약 및 사업이행계약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들을 상호 합의해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를 약정하였다(같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1. 상기 당사자는 2021년6월 10.일에 체결한 아래 참조1의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상호 합의하는 것으로 한다.
2. 단, 본 참조1의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2022년 4월 29.일까지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3. 위 2항의 내용이 이행 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의 상호간에 체결된 참조1의 계약 내용대로

계약기간의 1년이 되는 시점(2022년6월9.일)에 "갑"은 "을"에게 일금 일억원(100,000,000원)의 지급 의무를 가지는 것을 상호 확인 하였으며, 이에 본 지급각서의 내용을 상호 명확히 확인 하였고, 상호 날인한다.

2022년 3월 19.일

참조1. E 영상AI 사업 협력 계약(F)의 사업이행계약

참조2. 2022/03/10 내용증명 'E 영상AI사업협력계약'의 사업이행계약 해지의 건

라. 피고는 2022. 4. 29.은 물론 2022. 6.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각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각서에 따른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을 약정한 2022. 6. 9.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지의 조건인 약정금 100,000,000원은 피고가 영업독점권을 부여받는 조건이었고 피고는 영업독점권을 반납하였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약정한 다음날인 2022.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판사안홍준